##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직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18. 7. 6.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소속 직원(6급이하 공무원 및 대학회계 직원)의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직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위원풀(Pool)을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③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수 있다.
    - 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 2. 대학에서 법학·행정학·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④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사팀장으로 한다.
- 제3조(고충심사상의 유의사항)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고충심사를 할 때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 1. 고충처리 업무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소속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 의 권익을 보장하고 근무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할 것
  - 2. 고충처리를 통하여 직원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높이고 원활하고 능률적 인 직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것
  - 3. 고충심사는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신속하 게 처리할 것
- 제4조(심사 대상 고충 등의 범위) ① 이 규정에 따른 직원의 심사 대상 고충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근무조건

- 가. 봉급·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나. 근무시간·휴식·휴가에 관한 사항
- 다. 사무실·업무량·후생복지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 2. 인사관리

- 가. 승진·전직·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
- 나.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교육훈련·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다. 상훈·제안 등 업적 성취에 관한 사항
- 3. 그 밖의 신상문제
  - 가. 성·종교·연령 등에 따른 차별 대우와 관련되는 사항
  - 나. 그 밖에 개인의 정신적·심리적·신체적 장애로 발생하는 직무수행의 문제에 관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소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관한 사항 등결정에 관한 사항,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이 다른 법령에 따라 처리되는 사항에 관한 고충을 접수한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는 등적절히 처리해야 한다.
- 제5조(고충심사의 청구) ① 고충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1호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총장에 제출하고 총장은 지체없이 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 1. 성명, 생년월일, 직위, 소속, 직급, 주소
  - 2. 고충심사를 청구한 취지와 이유
  - ② 간사는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고충심사청구부에 기재를 해야한다.
  - ③ 간사는 접수된 청구서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청구서 처리전과 별지 제3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 처리점검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6조(청구서의 보완 요구) 위원회는 제5조 제3항에 따라 청구서의 내용을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보고되면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 제7조(자료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6조에서 요구한 내용이 보완된 후 필 요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소속 부서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필요 한 자료나 변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소속 부서에서 관계 자료 등을 제출하면 간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청구관계자료처리전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사실조사) ① 위원회는 고충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또는 증인이나 참고인을 불러 묻거나 고충관련기관에 대한 자료조사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간사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문답서, 그밖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 ③ 위원회가 청구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출석 통지를 해야 한다.
- 제9조(회피 및 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는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그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10조(고충심사절차) ① 간사는 제8조에 따른 사실조사가 끝난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 ② 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 청구인이 소속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대리인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관계부서에 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문 분야에 관한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감정 또는 자문을 의뢰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고충심사의 청구인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 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1조(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 ① 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해 청구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심사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기일통지는 심사일 5일전까지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하며, 통지를 받은 청구인이 심사기일에 상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때에는 위원회는 진술 없이 심사·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할때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취하)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언제든지 청구의 일

- 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 제13조(고충심사회의) ① 위원회의 심사회의는 제10조에 따른 심사보고서가 회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장이 정하는 일시에 연다.
  - ② 심사회의에는 위원장, 위원, 간사, 청구인 및 증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
  - ③ 간사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심사조서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은 이에서명을 해야 한다.
- 제14조(결정) ① 고충심사의 결정은 회의에 지정된 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 ② 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시정요청 : 고충심사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개선권고' 또는 '의견 표명' :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기각 : 고충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각하 : 고충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사안이 종료된 경우,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로 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 ③ 결정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결정의 이유가 적혀있어야 한다.
- 제15조(결정문의 제출 등) ① 간사는 심사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 호 서식의 결정문안을 작성하여 위원장 및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 ② 위원회는 결정문을 지체없이 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16조(고충심사결과처리) ① 총장은 청구인, 처분부서 등 피청구인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정을 요청받은 처분부서 또는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시정 요청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특별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총장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7조(재심 청구 안내) 청구인이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간사는 재심청구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18조(처리결과의 확인) 감사 담당 공무원은 자체감사 할 때에 고충심사의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제19조(고충심사 처리 현황의 관리) 위원회는 별지 13호 서식에 따른 고충심 사 처리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부칙 <제443호, 2018.7.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충심사청구서

1.	사건명	:	청구

2. 청구인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세)
소속	
직(계)급	
주 소	(우편번호 : )
전자우편	- 자택 또는 직장 : - 휴대전화 :
전화번호	
대리인(선임시 기재)	

3. 피청구인 :

4. 고충이유 : 별지로 작성

5. 입증자료 :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위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직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귀하

# 청구서 처리전

		담당	인사팀장 (간사)	총무과장 (위원)	총무국장 (위원장)							
사	사 건 :											
	성 명		생년월일									
청 구	직 위			직급	<u>-</u>							
' 인	주 소											
	소 속											
		고충	충심사를 청구	구한 취지와	이유							
지 침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직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고충심사청구 처리점검표

청구	7인							
사	건							
접	수			처리 기긴	<u>}</u>			
보	완	요구일 :	보완	기간 :	·	보완일 :		
	구 계	요구일 :	제출	기간 :		제출일 :		
	게 료	처분일 :	처분 과 :					
조	사	청구인조사 : 유무	청구인조사 : 유무 고충관련기관조사 :					
심 회	사 부	심사기일 통지 :	통지	서 수령 :	사보고서 결재 :			
심	사	심사기일 :	기피신청 : 유 무(위원:					
회	의	당사자 출석 :		청구인 : 참석·불참 고충관련기관 : 참석·불참				
결	젊	결정일자 :		결정내용 :				
包	정	결정문안결재 :	결정	결정원본서명 :		정본 발송 :		
서 정	류 리	서류정리일자 :	보관 장소 :					
확	인	담 당 :		인사팀장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직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별지 제4호 서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직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사 건

수 신

제 목 청구서의 보완 요구

위 기일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보 완 사 항

#### [별지 제5호 서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직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사 건

수 신

참 조

제 목 고충심사 관계 자료의 제출 요구

에 근무하는 가(이) 붙임과 같이 고충심사청구를 했으므로 이를 통지하는 동시에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 2 제5항 및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제7조에 따라 심사에 필요한 아래의 자료를 요구하니 200 . . .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구이유 각 항목에 대한 변명서 및 그 입증 관계 자료

청구 이유	변명 사유	입증 관계 자료

2. 그 밖에 이 건 소명에 필요한 관계 법규 및 자료

위 청구 관계 자료에는 증거목록이 표기되어야 하고 일련번호가 붙어야하며, 각 청구 관계 서류 사본에 작성자의 간인이 있어야 합니다.

붙임 고충심사청구서 1통. 끝.

# 청구 관계 자료 처리전

	담당	인사팀장 (간사)	총무과장 (위원)	총무과장 (위원장)
사 건:				
<u>청구 취지</u>				
변명 요지	<u>입증</u>	관계 자료	<u>!</u>	
처리 지침				
가스 리카 나 X 와.	키크 키시	リドーラ	기기시시시크	
서울과학기술대	악ル 식원	모중고중	임사귀원외	

문 답 서

사	건		
성	명	(	)
생 년	월 일		. (만 세)
소속	및 직위		
주	소		
	본인은	에 관한	으로서
	•	. 에서 다음과	같이 임의 진술한다.

본 문답서는 본인의 진술과 다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유 의사에서 진실을 진술하였음을 증명하여 이에 서명날인한다.

진 술 자 인

년 월 일

조 사 자 인

입회자 인

## [별지 제8호 서식]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직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사	건												
수	신												
제	목	출석	통지										
			•		자로	<u>!</u>		에 ·	근무	하는		가(	이)
청구	1한	고충심	심사를	- 위혀	해 「공	2무원	고충치	허리 규	-정」	제7조에	따라	귀하와	면
담히	라려고	1 하니	→ 아i	래 일	시 및	! 장소	_에 출	석해 즉	주시 7	기 바랍니	다.		
출소	† 일	시 :					:	(	뀽	일)			
출스	† 장	소 :											

# <u>심사보고서</u>

담 당		결	Ę	달 달		- 1		총무과장 (위원장)
)   ,	나 건	재						
	성 명			생기	년월일			
청 구	직 위			,	직급			
- 인	주 소							
	소 속							
고충관련 부 서								
청·	구 취지							
심	사 기일	•		. (			)	
접수 일자				처리	기한			
	비							
IJ								

[별지 제10호 서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직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사 건

수 신

제 목 고충심사 기일의 통지

자로 가(이) 청구한 고충심사를 아래와 같이 심사하고자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8조에 따라 그 기일을 통지하 니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을 출석시킬 때에는 반드시 대리인 지정서를 지참해 주시 기 바랍니다.

사정이 있어 출석할 수 없게 되어 서면으로 진술하려면 심사기일 전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직원 보통고충처리위원회에 도착할 수 있도록 진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일시 : . .( 요일) :

출석 장소 :

### 심사 조서

사 건		청 구 인		고충 관련 기관	
일 시		:	장 소		
위원회	위 원 장: 위 원: 관계 직원:				(인)
출 석 당사자	청 구 인: 고충관련부서:				
	위원장	·은		고충심사이	에 대한

심사회의의 개회를 선언한다.

은 고충심사당사자들을 인정심문하여 당사자임을 확인한다.

위원장은 고충심사당사자들에게 기피하려는 위원 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은 청구의 취지와 청구이유 요지를 낭독하 고, 청구인에게 제출한 청구서 내용과 다른지 확인한 결과, [별지 제12호 서식]

결 정 (안)

사 건

청구인 성 명

소 속

주 소

( )

직 급

년 월 일 청구인이 제출한 고충심사청구에 대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직원 보통고충처리위원회에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유

## [별지 제13호 서식]

## 고충심사 처리 현황

. . . . 현재

접 수: 건

<u>처 리:</u> 건

시정요구

기 각

각 하

취 하

진 행: 건